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1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1. 시행일자

- 2026년 10월 17일 00시

2. 최고액 지정 대상

-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3.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 일반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784원	리터당 1,773원	리터당 1,380원

-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
리터당 1,803원	리터당 1,792원	리터당 1,399원

※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산업통상부고시 제2026-112호)」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